

「반도체 특성화대학 지원 사업」 및 특성화대학 지정 신청 통합 공고

『반도체 특성화 대학 지원사업』 및 반도체 특성화 대학 지정 신청 절차를 아래와 같이 통합 공고합니다.

2023년 3월 6일

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
한국산업기술진흥원 원장

1. 반도체 특성화대학 지원 사업

1. 사업목적

-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 산업이며 안보자산인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이 세계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대학을 중심으로 반도체 인재양성 확대

2. 지원내용

- 사업예산 : '23년 540억원(사업관리비 포함), 8개 대학(연합)
- 사업기간 : '23. 3. 1. ~ '27. 2. 28. (4년(2+2))
- 사업유형 및 지원규모
 - (유형1) 단독형 : 수도권 2교, 비수도권 3교
 - (유형2) 동반성장형 : 수도권-비수도권 연합 1개, 비수도권 연합 2개
- ※ 유형별 지원 예산 등은 사업관리위원회에서 사업계획 등을 감안하여 최종 결정하며, 2~4년차 단가는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
- ※ 특정 유형이 계획된 물량 보다 적게 선정되는 경우(미신청 또는 최소기준 미충족 등), 수도권 3개, 지방 5개 범위 내에서 다른 유형으로 전환하여 선정 가능

< 유형 구분 >

유형	지역 구분	구성	구성 조건	규모	지원 예산 (사업관리비 포함)
(유형1) 단독형	수도권	개별대학	-	2개교	45억 내외
	비수도권	개별대학	-	3개교	70억 내외
(유형2) 동반 성장형	수도권/비수도권	대학연합	수도권+비수도권	연합 1개	70억 내외
	비수도권	대학연합	비수도권(권역* 내 대학)	연합 2개	85억 내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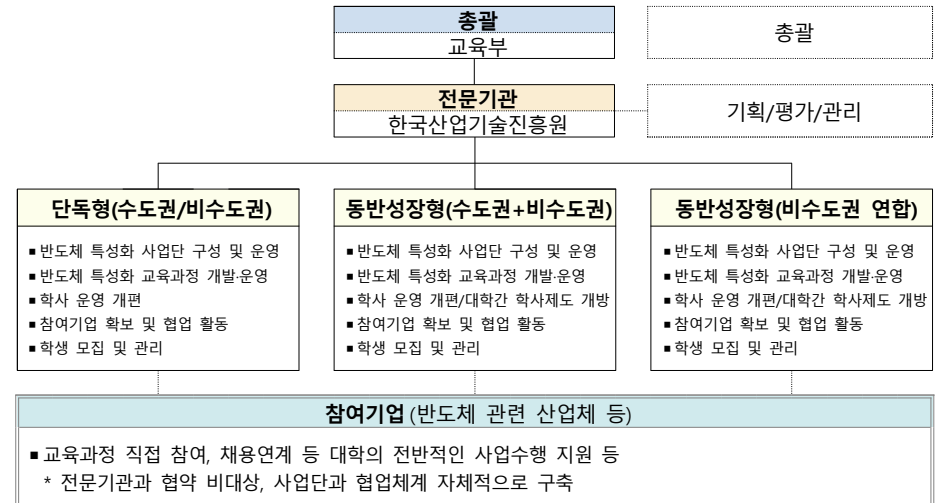
* 권역 구분: 충청권, 호남제주권, 대경 강원권, 동남권

< 동반성장형 대학연합 구성-운영 요건 >

- ▶ (사업계획) 주관대학-참여대학이 연합하여, 하나의 사업계획을 수립 후 신청
- ▶ (구성범위) 수도권 동반 성장형은 수도권 1교, 비수도권 대학 1교로 구성
비수도권 동반 성장형은 동일 권역 내 최대 3개 대학으로 구성
- ▶ (사업비) 주관·참여 대학에 각각 교부, 결과 및 정산 보고는 주관대학이 총괄

- 지원기준 : 국고 지원 100% (민간부담금 매칭 의무 없음)

3. 추진체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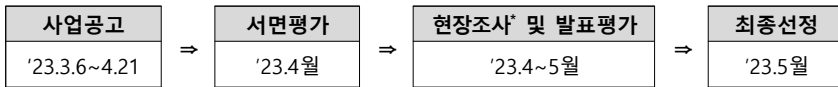
4. 선정계획

- 신청대상 및 지원요건
 - (공통)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의 대학
 - (유형1) 단독형 : 대학별 특성화 계획 수립
 - (유형2) 동반성장형 : 대학 연합 단위 특성화 계획 수립

< 연합형 특성화 계획 수립 시 필수 포함 사항 >

- ① 대학 간 사업 공동 추진 및 공동학사 운영을 위한 대학 간 협약서
- ② 사업 추진체계에 대학별 역할 분담 및 인적·물적 자원 공동활용 방안 및 계획(시설, 장비 및 교원 등)
- ③ 참여대학 간 학사제도 공동 운영 계획(예시: 대학 간 공동 교육과정 운영계획, 공동 학과(전공) 운영계획, 공동/복수 학위/인증 수여 계획 등)

- 선정평가
 - (평가주체) 사업에 대한 전문성이 높은 산·학·연 전문가로 '평가위원회'를 구성·운영하되,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상피제 적용
 - ※ 산학연 전문가는 산업계, 학계, 연구계 등 다양한 주체를 포함하여 구성
 - (평가방법) 제출서류, 신청자격 등 사전검토 후, 서면평가, 현장조사(방문평가) 및 대면 발표평가를 통해 최종 참여 대상 선정



- * 신청서 등에 제출된 대학별 교육/실습 여건 등 확인
- (선정기준) 사업계획 평가(서면, 현장+발표)를 통해 평가위원단의 평가점수가 높은 사업단을 선정
 - ※ 단, 평가점수가 총점의 70%미만일 경우, 선정 대상에서 제외(단독형, 동반성장형 공통적용)
- (지자체 및 민간 대응투자) 선정평가 시 총점의 10% 범위 내에서 가점으로 반영 (필수요건 아님)
 - ※ 동반성장형 필수요건, 평가항목 및 배점은 【붙임 1】 기본계획 참조
 - ※ 발표평가 전 사전검토시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

5. 신청방법

- (신청절차) 가 신청(예비신청)접수 후 본 신청 접수
- 대학에서 제출한 평가자료(사업계획서, 증빙자료 등) 작성 제출 시 허위사실이나 중대한 오류가 발견될 경우, 선정취소 또는 협약해지 가능

□ 가 신청

- (접수기간) '23. 3. 13(월) ~ 22(수), 17:00 까지
- (제출서류) 가 신청서 1부(【붙임 2】 참조)
- (제출방법) 온라인 제출
 - 한국산업기술진흥원(www.kiat.or.kr) 「사업공고」 메뉴에서 “2023년 반도체특성화 대학지원사업 가신청 수요조사” 참조
 -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관리시스템(http://k-pass.kr)의 “과제 신청”에서 전산 접수 후 접수증 확인(제출 불필요)
 - ※ 가 신청서는 신기술분야에 대한 수요조사를 목적으로 실시하며, 본 신청에 제약조건으로 작용하지 않음(본 신청시 특성화 분야, 연합 대학 구성 변경 가능)

□ 본 신청

- (접수기간) '23. 4. 3(월) ~ 21(금), 17:00 까지
- (제출서류) 사업계획서 및 붙임, 별첨 자료 등 (【붙임 3, 붙임4】 참조)
- (제출방법) 온라인 제출
 -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(www.kiat.or.kr) 「사업공고」 메뉴에서 “2023년 반도체 특성화대학 지원사업 기본계획 및 지정 통합공고”의 신청서류 양식을 받아 사업 계획서 및 부속서류 등 작성 후 온라인 신청
 -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관리시스템(www.k-pass.kr) 「과제신청」을 통해 온라인 신청 후 접수증 확인(제출 불필요)
 - ※ 온라인 신청 및 입력 매뉴얼은 사업관리시스템 홈페이지 참조
 - ※ 전산입력 실수, 접속자 과다로 인한 시스템장애 등을 감안, 마감 1일 전 접수 권장

II. 반도체 특성화 대학 지정 제도

1. 추진근거

- 반도체 산업은 '국가첨단전략산업법' 상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지정('22.11)되어 정부는 동법 제37조에 따른 '특성화대학'을 지정할 수 있음
- 교육부의 '반도체특성화대학'으로 선정된 대학은 아래 절차를 거쳐 '국가첨단전략산업법' 제37조의 특성화대학으로 지정될 수 있음
 - ※ △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37조(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등의 지정 등), △동법 시행령 제45조(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의 지정 등), △특성화대학 등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 제6조(특성화대학 등의 통합공고 및 신청)

2. 지정절차

추진절차	시행기관	일정(안)
사업 선정결과 확정, 제공	교육부 → 통합사무국	'23.5월 ~
↓		
지정위원회 운영	통합사무국	'23.6월 ~
↓		
지정검토 결과보고	통합사무국 → 교육부/산업통상자원부	'23.6월 ~
↓		
특성화대학 지정 확정	교육부/산업통상자원부	'23.6월 ~
↓		
특성화대학 지정결과 고시	산업통상자원부	'23.7월 ~
↓		
지정결과 통보	통합사무국 → 신청기관 / 전문기관	'23.7월 ~

3. 지정요건

- '특성화대학 등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' 제5조에 따른 신청요건에 부합 여부, 지원사업의 선정결과를 토대로 특성화대학 지정위원회에서 지정요건의 충족 여부 검토
- ※ 필요시 지정위원회 검토 과정에서 추가 자료 요청을 할 수 있음.

4. 유의사항

- 특성화대학 지정을 신청하고자하는 대학은, 지원사업에 공모하면서 별도의 특성화대학 지원신청서를 대학의 총장 명의로 제출
- ※ 특성화대학 지원사업 신청(수행)없이 지정만 단독 신청할 수 없음

III. 공통 사항

□ 문의처

- 소관부처 : 교육부 인재양성지원과

구분	문의처
■ 사업신청 관련	한국산업기술진흥원 혁신인재양성실(02-6009-3292)
■ 지정신청서 관련	반도체특성화대학 지정 통합사무국(02-6009-3238)
■ 온라인신청 관련	시스템 접수 문의 (02-6009-4374, 4390) * 신청서류 접수시스템 홈페이지 URL (https://k-pass.kr)

IV. 근거법령 및 규정

□ 근거법령 및 규정

- 국가연구개발혁신법, 국가첨단전략산업법,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시행령, 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 등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
- 산학협력법, 산학협력법 시행령
- 고등교육법, 대학 재정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

□ 유의사항

- 동 사업은 인력양성 목적의 사업으로 기술개발에 따른 수익사업이 아님에 따라, 기술료 징수 및 성과활용 보고 면제
 - * 관련근거 :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8조(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),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40조(기술료 등의 감면)
- 동 사업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제2항제4호에 따라 동시 수행 연구개발 과제 수로 산정하지 않음
- 사업 기본계획에 근거한 사업 운영 및 사업비 사용과 관련한 별도 사업 지침 적용
-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중인 자는 사업 총괄책임자로 참여 불가하오니 유의

- 【붙임 1】반도체 특성화대학 지원사업 기본계획 1부.
- 【붙임 2】반도체 특성화대학 지원사업 가신청서 서식 1부.
- 【붙임 3】반도체 특성화대학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제출 안내 1부
- 【붙임 4】특성화대학 지정신청서 및 증빙목록표 양식 1부